

2011년도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출자금 운용사 추가모집 계획 공고

2011년도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출자금 운용사 추가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

개 요

출자규모 : 200억원 이내

기본조건

- 투자기간 내 결성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정부가 선정한 신성장동력 분야의 신기술을 사업화·산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전문적으로 투자

3대 분야	신성장동력 세부 분야
녹색기술산업	신재생에너지, 탄소저감에너지, LED응용, 그린수송시스템 등
첨단융합산업	IT융합시스템, 방송통신융합산업, 로봇응용, 신소재·나노융합, 바이오제약(자원)·의료기기 등
고부가서비스업	콘텐츠소프트웨어 등

선정대상 및 신청자격

	항 목	세 부 내 용	
선정 대상 및 신청 자격*	사모투자전문회사	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68조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	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72조에 의한 업무집행사원
	신기술사업투자조합	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	신기술사업금융업자
	창업투자조합	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20조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	창업투자회사

* 유한회사 등 기타 선정대상 및 신청자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의

2

출자대상

- 수도권 이외의 특정 지역 기반으로 녹색·신성장 기술 기업, 친환경·녹색 SOC,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지방(지역매칭) 펀드

3

선정 우대 및 배제(취소) 기준

□ 선정 우대기준

-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외 출자자의 출자의향서(LOI, LOC) 등을 제출한 경우(서면으로 확인된 경우)
- 결성총액 대비 외국자본의 출자비중이 높은 경우(서면으로 확인된 경우)
- 업무집행사원의 출자비중이 높은 경우
- LED응용, 그린수송시스템, 로봇응용, 신소재·나노융합, 바이오제약(자원)·의료기기, 콘텐츠·소프트웨어 등 6대 신성장동력 전문펀드를 조성할 경우
* 상기 6대 신성장동력은 단일 전문펀드 조성 가능

□ 선정 배제

- 업무집행사원이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법령 위반 상태이거나 과거 법령위반 등을 감안하여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
-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업무집행사원의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□ 선정 취소

-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펀드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
- 평가위원회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운용기관이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

- 운용기관이 출자의향서 형태의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,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
- 운용기관이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투자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펀드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* 선정된 운용사의 대표이사, 대표펀드매니저 등에 대한 신용조회를 통해 도덕성을 검증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

4

주요 출자조건

-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자비율 : 펀드 결성제안금액의 20% 이내
- 펀드운용사 의무출자비율 : 펀드 결성제안금액의 1% 이상
- 결성규모 : 최종마감(Final Closing)시의 펀드약정총액은 1,000억원 이상
 - * 非수도권 지자체(광역경제권) 200억원 이상 매칭출자 조건(출자의향서(LOI, LOC) 등 지자체의 출자의사가 확인된 경우에 한함)
-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우선손실충당 : 우선손실충당금 없음
- 투자의무비율
 - 투자기간 내 결성액의 50% 이상(단, 펀드약정총액 초과 결성금액은 자율적 투자 허용)
 - 지역적으로는 국내 기업에 투자금액의 80% 이상 투자
 - * 펀드약정총액의 30% 이상이 해외자본일 경우 국내기업 투자의무를 최대 60%까지 하향
- 펀드존속기간
 - 8년 이상, 사원(조합원) 특별결의로 2년 이내 연장 가능
 - * 상기와 다른 존속기간 설정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의
- 출자금 납입방식 : 일시납, 분할납(draw-down), 수시납(capital call) 중 선택 가능

□ 출자금 마감방식 : 추가 증액방식(Multiple Closing) 허용

* 최초결성액(First Closing)이 결성제안금액의 70% 이상인 경우 우선 Launching 가능

□ 관리보수

○ 결성일부터 투자기간* 이내 : 펀드약정총액의 2.5% 이내

○ 투자기간 종료 이후 : ①, ② 방법 중 선택

① 투자잔액(일일평균 또는 분기평균)의 2.5% 이내

② 펀드약정총액의 2.5% 이내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차감

* 투자기간

- 존속기간 8년 → 투자기간 4년

- 존속기간 10년 → 투자기간 5년

- 상기와 다른 투자기간 설정의 경우,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의

□ 성과보수

○ 기준수익률 : IRR 5% 이상

○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% 이내

□ 수탁회사

○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수탁기관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펀드자금 관리

○ 펀드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

□ 핵심인력

○ 대표펀드매니저(Keyman)는 결성금액의 70%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다른 펀드의 펀드매니저 겸임을 제한

□ 지속가능경영 준수 의무

○ 펀드가 투자하는 기업은 「산업발전법」 상의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준수 의무(같은 법 제19조)

□ 기타사항

○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사원(조합원)과 개별 협의

5

선정 절차 및 일정

□ 선정 절차

- 제안서 접수 → 1차 심의(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) → 2차 심의(발표 심의) → 최종 선정

□ 선정 일정

일 자	내 용	비 고
'11. 6. 22(수)	제안서 접수 마감	17:00 까지
'11. 7월	최종 선정결과 발표	개별 통지
'11. 11월	펀드 결성 완료	최종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

*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6

지원방법 및 설명회

□ 지원 방법

- 제안서 양식(별첨 참조)에 의거한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CD 1매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마감일까지 제출

※ 제안서 양식 다운로드 : www.kiat.or.kr

- 접수 마감일 : 2011. 6. 22(수) 17:00 도착분에 한함

7

기 타

-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선정 이후에도 선정 취소 및 동 펀드의 참여 제한 조치함

8

접수처 및 문의방법

- 접수처 :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TF
(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)

□ 문의방법 : 사업화금융TF 전화(02-6009-4341, 4343, 4346)
E-mail(gamsa9@kiat.or.kr)

2011년 6월 10일

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